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가단3128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부산 부산진구 F 대 77㎡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사이에 2019. 8.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31. GE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17755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7. ‘G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1,626원 및 그 중 2,893,3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E에 대하여 2018. 8. 24. 확정되었다.

나. E의 부(父)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8. 2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 아들인 E(상속지분 2/9), I(상속지분 2/9), J(2015. 3. 15. 사망하여 배우자 K(상속지분 6/45), 아들 L(상속지분 4/45)가 대습상속)이 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부산 부산진구 F 대 77㎡, M 대 36㎡, N 대 9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E, I, K, L와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45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O단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위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의 채무를 전혀 몰랐기에, E에 대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상속재산 분할협의 일자를 2019. 11. 13.로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직권으로 바로잡는다.